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소방·교정공무원 퇴직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노력 의무〉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5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정신건강 문제로서 트라우마 포함	3
2. 경찰·소방·교정공무원 퇴직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노력 의무 ..	7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신건강 문제로서 트라우마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양상으로 현행 우울·불안·고독 외에 트라우마를 추가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을 규정하는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 <u>고독</u>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고독·트라우마</u> ----- ----- ----- -----.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략)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우울 · 불안 · <u>고독</u>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 16. (생략) ④ ~ ⑦ (생략)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우울 · 불안 · <u>고독</u>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생략) ② ~ ⑥ (생략)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 · 불안 · <u>고독</u>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13. -----<u>고독 · 트라우마</u>----- ----- ----- ----- 14. ~ 1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고독 · 트라우마</u>-----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 ----- ----- ----- ----- ----- ----- -----<u>고독 · 트라우마</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과거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서, 사고 후유 장애 또는 사고 후유 정신장애로 표현될 수 있음.¹⁾

□ 현행법은 우울·불안·고독을 정신건강상 문제의 주요 표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트라우마는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울·불안·고독과는 발생 원인 및 양상에 있어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심리지원이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²⁾ 등의 문제로 이어져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행법 제15조의²³⁾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

1)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mn_id=158&imprv_refine_seq=11772)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는 트라우마와 달리 다양한 공식 정신질환 진단명들 중의 하나임.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정신건강증진 정책에서도 트라우마에 대한 예방 및 심리 지원을 별도의 정책적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상 문제의 한 유형으로 트라우마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예방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찰·소방·교정공무원 퇴직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노력 의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현직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정신건강 교육·상담 및 정신질환치료와의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시설은 구성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③ (생략)	<u>근거하여 설치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u>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6.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7.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의무 기관 관련 현행 법령 체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학교·단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u>경찰서</u>(「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u>소방서</u>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u>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u>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u>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u>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교정시설</u>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u>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u>
3. 「근로기준법」에 따른 <u>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u>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u>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u>사회복지시설</u>을 말한다.

□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을 해당 기관의 현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이었던 사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퇴직 또는 이직 이후에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참사 현장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에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례⁴⁾에서와 같이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및 군인의 경우 반복적·직접적으로 극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영향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발현될 수 있다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직역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및 군인으로 퇴직한 모든 사람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역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상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

4) 60대가 되어 퇴직한 어느 소방관이 30여 년의 근무기간 중 각종 대형 화재를 진압하거나 참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면서 얻은 공황장애·수면장애·불안장애로 인하여 퇴직 후에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사례가 소개됨[‘불길의 꺼진 후 그들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주간조선, 2026. 2. 28.,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3>)]

으로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⁵⁾에서는 직역이나 퇴직 여부 등에 따른 별도의 대상자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법정 대상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해당 직역의 관계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업무성질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직역에 대하여 트라우마 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주체는 각 기관의 장으로 부처 간 이견 조정 필요.
- (경찰청)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퇴직경찰관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원예산·인력 등 확보 방안 고려 필요함.
- (국방부)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자는 현역에 복무하거나,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임. 군 보건의료체계 역량 고려 시 징집 해제 병역의무자를 포함한 퇴직 군인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은 국가차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 필요함.
- (법무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수용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 정비 필요함.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일정한 시간 경과 후 발현되는 트라우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회복과 재활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8